

공

고

◎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27호

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(배달증명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8일

대구전파관리소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성명	허가번호	주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정○선	42-2016-60-0000067	영덕군 축산면 축산리	무선국 검사불응 (1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김○호	42-2006-20-0000067	포항 북구 흥해읍		
황○환	49-2021-60-0000041	울릉군 울릉읍 저동리		
김○희	41-2020-50-0000029	울릉군 서면 태하리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, 제25조(무선국의 운용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6. 9. 28.

4. 청문장소: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(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)

5. 참고사항

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: ☎053-766-9001 포항사업소: ☎054-282-2367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3-749-2834, 팩스053-749-28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